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연월일 : 2025. 9. 28.

발 의 자 : 허 영 의원

찬 성 자 : 165인

수정이유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는 특별위원회의 경우 종료된 이후에 증인 등의 위증 등의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고발할 수 없는 문제를 개정하는 등 동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나,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고발 의무를 회피하거나 고발 의사가 없는 경우 위증 등 범죄에 대한 고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고 고발 주체와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함.

수정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위원장이 고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 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3항 단서).
- 나.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다.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고 등을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수사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제5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5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안 제15조제4항 중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를 “법제사법위원회가 그 위원장의 명의로”로 한다.

안 제15조의2제5항 전단 중 “본회의에”를 “법제사법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장은”을 “법제사법위원장은”으로, “본회의는”을 “법제사법위원회는”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안 부칙 제3조를 제2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2조)제5항 전단 중 “본회의에”를 “법제사법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의장은”을 “법제사법위원장은”으로, “본회의는”을 “법제사법위원회는”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제15조(고발) ① ----- ----- ----- ----- ----- ----- 수사기관의 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고발----- ----- ----- ----- ----- ----- -----.	제15조(고발)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 등을 요구하였거나	③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 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
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
의로 한다. <단서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
에는 검사는 고발
장이 접수된 날부
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
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3항
에도 불구하고 위
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제14조제
1항 본문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
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
할 수 있다.

제15조의2(수사기간)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④ -----

-----법 제사범위
원회가 그 위원장
의 명의로-----
-----.

제15조의2(수사기간)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 「형사소송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사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건을 이송 또는 이
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
를 본회의 또는 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특
별한 사유로 제1항
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
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수사기간 연
장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2개
월의 범위에서 수
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본회의 또는 위
원회는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른 수사
기간 연장 없이 제
1항에 따른 기간을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초과하여 수사 중
이거나 제3항에 따
라 연장된 수사기
간을 초과하여 수
사 중인 때에는 해
당 수사기관의 장
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
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그 수사기
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사기
관의 장은 지체 없
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본
회의 또는 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
다.

⑤ 위원회의 활동기
한 종료 등의 사유
로 제1항부터 제4항
까지에 따른 보고
등을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⑤ -----

<u>수사기관의 장은</u> <u>본회의에 보고 등</u> <u>을 하여야 한다. 이</u> <u>경우 의장은 제3항</u> <u>에 따라 수사기간을</u> <u>연장할 수 있고, 본</u> <u>회의는 수사기관의</u> <u>장에 대하여 제4항</u> <u>에 따른 필요한 조</u> <u>치를 요구할 수 있</u> <u>다.</u> 부 칙 <u>제2조(활동기한 종료</u> <u>위원회 고발에 관</u> <u>한 적용례)</u> <u>제3조(수사기간 등에</u> 관한 적용례) ① ~ ④ (생 략) ⑤ 위원회의 활동기 한 종료 등의 사유 로 제2항부터 제4항 까지에 따른 보고 등을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검찰총장은 <u>본회의</u> <u>에</u> 보고 등을 하여	----- <u>-법제사법위원회에</u> ----- --. -----<u>법제사법</u> <u>위원장은</u>----- -----<u>법</u> <u>제사법위원회는</u>-- ----- ----- ----- --. 부 칙 <u><삭 제></u> <u>제2조(수사기간 등에</u> 관한 적용례)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 ----- ----- ----- ----- ----- -----<u>법제사</u> <u>법위원회에</u>-----
---	--

	야 한다. 이 경우 <u>의</u> <u>장은</u> 제3항에 따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u>본회의는</u> 수사기관의 장에 대 하여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 -----<u>법제사법</u> <u>위원장은</u>----- ----- -----<u>법제사법</u> <u>위원회는</u>----- ----- ----- -----.
--	--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고발”을 “수사기관의 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고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그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수사기간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 「형사소송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사건을 이송 또는 이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중간 보고를 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른 수사기간 연장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이거나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그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고 등을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수사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고 수사 중인 경우 검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특별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검찰총장은 제1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5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검사가 제3항에 따른 수사기간 연장 없이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이거나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검찰총장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그 검사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고 등을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검찰총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수사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u>고발</u> 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제15조(고발) ① ----- ----- ----- ----- <u>수사기관의 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고발</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 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u><단서 신설></u>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 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u>다만,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u>

④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그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제15조의2(수사기간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 「형사소송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사건을 이송 또는 이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른 수사기간 연장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이거나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그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

의 사유로 제1항부터 제4항까
지에 따른 보고 등을 받을 위
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
사기관의 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에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장은 제3항
에 따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수사기
관의 장에 대하여 제4항에 따
른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